

■ 항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4]

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요건(제18조 관련)

구 분	기 준
1.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가. 법인: 납입자본금 7억5천만원 이상 나. 개인: 자산평가액 11억2,500만원 이상
2. 기술인력 가. 조종사 나. 정비사	항공기 1대당 「항공안전법」에 따른 사업용 조종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 1명 이상 항공기 1대당(같은 기종인 경우에는 2대당) 「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 1명 이상. 다만, 보유 항공기에 대한 정비능력이 있는 항공기정비업자에게 항공기 정비업무 전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정비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3. 항공기 가. 대수 나. 능력	1대 이상 해상 비행 시 항공기의 위치를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출 것
4. 보험가입	보유 항공기마다 기체보험, 제3자보험 및 승무원보험에 가입할 것